2015-2016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대응 방안

2017. 1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Foundation of Korea Cosmetic Industry Institute

대한화장품협회

[목 차]

1. 인증서류 미비 3

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4

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5

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6

5. 상품 오염 8

6. 라벨 불합격 9

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10

8. 배합금지 물질 검출 11

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12

1. 인증서류 미비

사례 1

제품명	The saem waterproof eye liner 得鲜唇蜜/唇膏 외 6개 제품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S사	
수입회사	黃山思图纺织有限公司	
검역소	안휘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 서류 제출 미비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1월

사례 2

제품명	가글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P사	
수입회사	威海荣裕国际货运代理有限公司	
검역소	상해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 서류 제출 미비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사례 1

제품명	GUERLAIN Eyeshadow 娇兰眼影	
원산지	프랑스	
제조업체	GUERLAIN	
수입회사	中免集团三亚市内免税店	
검역소	하이난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제품 품질 보증기간 만료	
관련 법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화장품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3호) 제3장 화장품 경영의 위생감독 제13조 화장품을 경영하는 기관 및 개인은 아래의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5) 사용기한을 초과한 화장품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수출 전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사례 1

제품명	Chiara Ambra Hand Balm 安珀莱滋养手霜	
원산지	독일	
제조업체	安珀莱健康美肌&时尚股份有限公司	
수입회사	乔山健康科技（上海）有限公司	
검역소	상해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서가 상품과 일치하지 않음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제품 수출 전에 검역신고 시 제출 할 위생허가증이 수출하는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사례 1

제품명	白雪牛奶洗发乳	
원산지	대만	
제조업체	白雪企业股份有限公司	
수입회사	厦门市高翊贸易有限公司	
검역소	하문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세균총수 허용기준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 부위 사용 화장품, 입술 부위 사용 화장품 및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 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지표 제한치를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4월

사례 2

제품명	에센셜 브라이트 쿠션 21호 외 2개 依普斯润光凝彩遮瑕气垫底霜21号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IPSE COSMETIC CO.,LTD
수입회사	北京泽宜通泰国际贸易有限公司（汉京凯美）
검역소	북경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균락총수 제한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 부위 사용 화장품, 입술 부위 사용 화장품 및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 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출되어서는 안됨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지표 제한치를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6년 1월

5. 상품 오염

사례 1

제품명	埃菲卡乳木果油牛奶皂(迷你型)	
원산지	미국	
제조업체	California Inside Out dba Out of Africa	
수입회사	上海朗涛贸易有限公司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상품오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수입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장검사, 샘플 추출 및 샘플 보관, 실험실 검사, 증거 제시 등을 포함한다. 제11조 현장검사 내용은 수송증명서 일치상황, 제품 포장, 라벨 지면 양식, 제품감관성상, 운송 도구, 컨테이너 또는 보존 장소의 위생 상황을 포함한다.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상품 운송 시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 주변 환경의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4월

6. 라벨 불합격

사례 1

제품명	Klar's Clove Soap, Klar's Orangenseife, Klar's Damenseife, Klar's Kinderseife, Klar's Lavendelseife, Klar's Hair and Body Soap Bergamot, Klar's Riesling Soap 등 (총 70개 제품)	 
원산지	독일	
제조업체	Klar Seifen GmbH	
수입회사	上海雅润工贸有限公司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라벨 불합격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포장 화장품 완제품을 판매할 때 앞의 네 가지 사항 이외에 중문라벨 견본인쇄물과 외국어라벨 및 번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화장품 완제품의 라벨표시는 아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은 화장품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품질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 1. 범위 GB 5296의 본 표준은 화장품 판매포장의 통용 표시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과 요구에 대해 규정한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4. 표시의 형식 화장품 포장의 모양과 (또는) 부피에 따라, 아래 표시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a) 화장품의 판매 포장상에 인쇄 또는 붙이는 것 b) 판매포장 외부면과 연결되어 있는 소책자 또는 종이테이프 또는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것 c) 판매포장에 내의 설명서에 인쇄되어 있는 것 6. 필수 표시 내용 6.1 화장품의 명칭 6.2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6.3 정함량(淨含量) 6.4 화장품 성분표 6.5 품질보증기한 6.6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위생허가증 번호와 제품비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7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등록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8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 비준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9 모든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요구와 화장품 특성에 따른 필요가 있을 시, 화장품 판매포장의 가시면에 안전경고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경고용어는 "주의(注意):" 또는 "경고(警告):" 등의 지시문구로 작성한다. ※ 각 필수 표시 내용의 자세한 표기법은 해당 법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중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사례 1

제품명	O- Hairdye Black 乌帝科帝染发剂黑色 O- Hairdye Natural Dark Brown 乌帝科帝染发剂自然深棕色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K사
수입회사	北京必捷阳光国际贸易有限公司
검역소	광동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메탄올 허용기준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4 유해물질 제한치 요구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

유해물질	제한치 (mg/kg)	비고
수은	1	유기수은방부제를 함유한 눈 부위 화장품은 제외
납	10	
비소	2	
메탄올	2000	
카드뮴	5	
디옥산	30	
석면	검출 금지*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제한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6월

8. 배합금지 물질 검출

사례 1

제품명	오렌지향 치약 花王CLEAR CLEAN牙膏 橘子香	
원산지	일본	
제조업체	花王有限公司	
수입회사	中山市晋隆贸易有限公司	
검역소	주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배합금지 물질 벤제토늄클로라이드 검출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 표1 치약 중 사용 금지 물질 **명칭** / **영문 명칭** 벤제토늄클로라이드 / benzethonium chloride	
대응 방안	치약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6년 6월

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사례 1

<table>
<tr><td>제품명</td><td>Day and Night Herbal Whitening Toothpaste
德恩奈美白草本牙膏</td><td rowspan="6"></td></tr>
<tr><td>원산지</td><td>독일</td></tr>
<tr><td>제조업체</td><td>DENTAL-KOSMETIK MANAGEMENT GMBH</td></tr>
<tr><td>수입회사</td><td>厦门科名星商贸有限公司</td></tr>
<tr><td>검역소</td><td>하문</td></tr>
<tr><td>조치상황</td><td>반송</td></tr>
<tr><td>통관거부 사유</td><td colspan="2">불소 함량 국가 표준 요구와 불일치</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 (GB 8372-2008)》
4. 요구
4.3 감관,이화 지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불소 총 함량/% (최소 허용치는 오직 불소 함유 충치 방지 치약에만 적용됨)</td><td>0.05～0.15 (일반 치약의 경우)
0.05～0.11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td></tr></table></td></tr>
<tr><td>대응 방안</td><td colspan="2">치약 제품 중 불소함량은《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td></tr>
</table>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6월